

16·17세기 在地士族의 ‘居鄉觀’

金 仁 杰

머 리 말

1. 鄉黨 운영원리로서의 ‘居鄉之道’
2. 16·17세기 在地士族 ‘居鄉觀’의

구조

3. ‘居鄉觀’의 정치적 성격
- 맺 음 말

머 리 말

조선은 ‘양반관료국가’, 조선사회는 ‘양반관료사회’로 이해되어 왔다.⁽¹⁾ 정치체제면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체제’ 또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로 설명된다.⁽²⁾ 보다 일반적으로 지배체제를 포함해서 조선은 양반사회라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³⁾ 어느 경우나 조선의 지배신분층을 양반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정치적 지향이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같은 설명을 가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방제도로써 군현제를 갖추고 전국 330여개의 군현에 왕명을 대행하는 중앙관(수령)을 파견하고,⁽⁴⁾ 관찰사로 하여금 수령을 감독하게 하는 한편 그들 스스로 지방세력화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9~13, 탐구당, 1977, 1978

李存熙,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3, 1994, 20쪽

한영우, 〈양반 관료국가와 양반문화〉,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창작과비평사, 1997, 177~198쪽

(2) 韓祐勗, 〈중앙집권체제의 특성〉,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10, 1977, 183, 209쪽

李泰鎭, 〈집권관료체제와 양반〉, 한국사연구회편, 《韓國史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1

(3) 李樹健, 〈양반사회의 구조와 그 전개〉, 이가원 외 편 《韓國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1

(4)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潮閣, 1984, 409~410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찰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하였으며, 아울러 기존의 토착세력이라 할 향리층을 견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⁵⁾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조선의 정치체제를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설명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조선사회 지배구조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조선사회의 역사를 살필때 국가(국왕)의 역할이 적지 않았고, 특히 초창기에는 국왕의 주도권이 현저했으며,⁽⁶⁾ 이후 정치의 수행자나 참여층이 변하면서 왕권의 성격도 변동을 겪게 되고,⁽⁷⁾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체제 운영자체도 지배층의 성격변화와 관련하여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당시 지배체제의 운영에 기반이 되고 있던 일반 민의 생산활동 영역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더우기 조선사회에서 국가의 민에 대한 지배는 지방사회의 지배층 및 공동체적 질서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반 민의 자립적 기반이 충분치 못하여, 특히 사노비의 경우 노비주의 인신적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일반 민이나 사노비들을 직접 파악하여 중앙집권적 통합력을 발휘하거나 그 전제적 지배력을 행사하기에는 난점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을 양반관료국가, 그 정치체제를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라는 방식으로만 설명하거나 조선사회를 단지 양반사회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선사회의 특질과 그 변동을 설명하는 데 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향촌사회에 관한 연구성과들은 조선이 지방사회를 지배함에 있어서 지방 지배층과 그들 주도하의 공동체적 질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향촌사회 지배층 중심의 권력구조를 용인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⁸⁾ 따라서 조선사회의 성격과 그 발전을 체계적으로

(5) 韓祐勳, 앞 논문, 《한국사》 10, 204~208쪽

(6) 崔承熙, 1987 〈朝鮮太祖의 王權과 政治運營〉 《震檀學報》 64

——, 1991 〈太宗朝의 王權과 政治運營體制〉 《國史館論叢》 30

——, 1994 〈世宗朝의 王權과 政治運營體制〉 《韓國史研究》 87

(7) 李泰鎮,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 1993, 103쪽

(8) 金仁杰, 1988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19

——, 1991 〈조선후기 鄉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鄭震英, 1990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3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배층(양반, 사족) 및 피지배층(민)이라는 3자 간의 역학관계의 성격과 그 변화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⁹⁾ 중앙집권적 관료제나 군현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만을 고려해서는 중세사회의 역동적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반(사족) 중심의 설명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국왕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전제군주론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본고는 조선 중기 국가의 지방지배가 재지사족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을 재지 사족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그들의 향촌사회 운영원리라고 파악되는 ‘居鄉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같은 작업은 조선시기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체제의 존속과 변모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조선에서 국가권력의 행사 방향과 조선사회 발전의 기제, 즉 국가권력, 지배층, 민 3자간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鄉黨 운영원리로서의 ‘居鄉之道’

조선사회의 지배층이 된 신홍 사대부들은 그들의 출신기반, 즉 중소지주적 성격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지방사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선의 지배층은 여말선초 科擧나 戰功 등으로 品官층으로 상승한 세력이 모집단이었던 것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지방사회의 지주적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따라서 구래의 권문세가들과는 대립적이었고 상대적으로 농민층에 우호적이었던바, 향촌사회에서 농민들의 안정 없이는 자신들의 지위가 안정적일 수 없다는 사실과도 관련하여 향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같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배층으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

(9) 한국 중세사회의 지배구조를 국가, 지배계급, 민 3자 간의 역학관계의 변화, 특히 민의 성장에 주목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특집 한국 중세사회의 지배구조와 ‘민’의 성장>《역사와 현실》 제3호, 1990)이 있다.

그런데 재지사족이 군현단위의 향촌사회 운영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16세기 이후에 들어와서야 가능하였다. 국가권력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반 농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국의 초창기에는 그 지위가 유동적이었다. 초기 왕조교체시의 주도권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중앙 집권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재지세력의 지위가 국가권력에의 참여 여부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당시 실정이었으므로 이들이 자신들의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지세력에 의해 장악되어있던 지방사회를 군현제로 재편하여 수령을 정점으로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책을 택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방세력에 의해 사적으로 장악되어있던 물적 기반을 국가의 통제하로 돌리는 작업과 맞물려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마찰이 없을 수 없었다. 일반 민 가운데는 역시 왕조 개창 초기라는 기회를 통해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거나 자유로운 자영농민으로 성장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았고, 국가권력이 그같은 경향을 방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사회에서는 여말선초의 권력구조개편시 재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향리층과는 구별되어 품관층이 하나의 새로운 사회세력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중앙권력은 아직도 지방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향리층을 제압하기 위해서 품관층을 이용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량품관에 대한 거경시위의 요구, 유향소의 치폐, 경재소를 통한 유향소 통제 등이 그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여기에서 초기 왕조의 개창과 관련하여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의 건설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한 上下(君臣)윤리의 확립이 강조되고 있었음에 비해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지배층들이 二倫 등에 보다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¹⁰⁾ 이 점은 조선 건국초기의 긴장국면이 해소되고 사림파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중앙정권의 기반이 확대되면서 재지사족의 정치적 지위가 상승하고, 따라서 이들 자신

(10) 金勳植, 1985 <16세기 《二倫行實圖》 보급의 社會史的 考察> 《歷史學報》 107

내부의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윤리체계가 요청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노력은 이제 자신들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민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지배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警民篇》의 편찬 보급, 鄉約의 실시는 그 대표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초기 향약이라던가, 향음주례는 상하민을 아우르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것은 기본적으로 사대부가 주체가 되고 또 대상이 되어 사족 내부의 결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향약이라는 것도 아직은 관념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같은 이데올로기는 중앙 훈구파라고 하는 집권귀족에 대한 중요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조광조 등 초기 사림파였다. 위로부터의 향약 시행이 실패하자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의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유향소 복립운동, 사마소 건립, 향약 실시 등을 통한 세력확대 모색은 그 결과물들이었다.⁽¹¹⁾

조선의 지배층들은 자신의 재지적 기반, 조직이 사회문제로 됨에 이르러서 이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논리를 새롭게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미 조선 초기부터 유향소 운영규약으로서 鄉規가 있어서 기능하고 있었는데,⁽¹²⁾ 향규만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향약의 원리로 보완하거나 새로이 향약 실시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 향규나 향약도 관권과의 관계에 있어 관의 협조가 없이는 군현단위에서조차 실현되기 곤란한 것이었고, 따라서 사족들은 그들 나름의 향촌사회 운영원리를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으니, 그것의 정치적 함의는 관권과의 관계설정이 주된 것이었다. 이는 재지세력의 영향력 행사가 관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경험

(11) 李泰鎮, 1972, 73, 〈士林派의 留鄉所 復立運動 - 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的背景 -〉, 《진단학보》 34, 35

——, 1983, 〈士林派의 鄉約普及運動 - 16세기의 經濟變動과 관련하여 -〉, 《韓國文化》 4,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12) 金龍德, 1986 〈鄉規研究〉 《韓國史研究》 54

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같은 점을 우리는 재지사족의 鄉黨 운영 원리라고 할 ‘居鄉之道’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재지사족의 향촌사회에서의 지위와 그 역할 및 행동에 관해서는 이미 유학의 기본적인 논리를 배울 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공자의 ‘孔子於鄉黨恂恂如也’라고 하는 《論語》의 어귀가 그점을 상기시킨다. 鄉黨은 父母 宗族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향당에서는 공손하고 모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향당에서의 지배층의 처신문제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고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향촌사회에서 성리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정착시키기 위해 향약을 실시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매개가 된 것이 이른바 주자에 의해 손질이 가해졌다고하는 《朱子增損呂氏鄉約》이었다.

그런데 ‘여씨향약’은 언급했듯이 조광조 일파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기 이전까지는 사회적 의미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오히려 향촌사회 지배층의 결속을 위한 성격이 더 짙은 것이었다. 전하는 자료 가운데 초기 향약이라고 할 수 있는 15세기 중엽 ‘光州鄉約’이 경내 선비들 가운데 문장 덕행이 있고 문벌이 현저한 아들 90인의 모임이었다는 점이⁽¹³⁾ 시사적이다. 즉, 초기 향약은 일반 민의 교화를 위한 후기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초기단계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小學’이나 ‘家禮’의 부수적인 형태로 이해되고 있었으니, 이는 향사례나 향음주례가 선비들의 모임으로 되고 있었던 것 외에 ‘鄉禮;居鄉之道’라는 것 역시 사족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居鄉雜儀〉가 당초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질 때 ‘鄉儀’로서 재지 지배층들의 윤리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하겠는데, 우리는 위와 같은 점을 16세기 받아들였던 明 丘濬의 ‘家禮儀節’에 추록되어 있던 〈居鄉雜儀〉에서 확인된다.

丘濬은 《周文公家禮儀節》에 〈居鄉雜儀〉를 추록하면서,

(13) 《秀巖誌》〈光州鄉約條目〉

「景泰二年辛未 卽我文宗元年(1451) 先生(李先齊)與本邑縣監安哲石(중략) 抄選境內士子 文章德行門閥顯著者九十員 書置別籍 以正鄉綱又行鄉約」

지금 呂氏의 舊條를 본으로 하여 朱子가 증손한 것을 절충하고 그사이 또 時俗에 맞는 것을 약간 참작하여 綱目을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도록 하고자 居鄉雜儀를 뒤에 추가로 기록하니, 비록 鄉儀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각자의 집에서 일용함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¹⁴⁾

라고 하였던 것이니, 여기에서 ‘鄉儀’의 보급대상이 ‘家禮’의 보급대상과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丘濬의 ‘家禮儀節’은 中宗 13년에 金安國이 북경 사행 당시 구입하여 왕에게 진상, 왕명에 의해 간행 반포된바 있다.¹⁵⁾

위와 같은 사실들은 ‘居鄉之道’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재지사족의 향당운리로 정착된 것이 아니고, 초기 향약이나, 소학, 가례 등의 도입과 함께 소개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일부로서 의례적인 내용 이상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수령의 한계가 노정되는가 하면 재지 지배층(留鄉品官)의 향촌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시기에 와서 居鄉觀은 이제 사대부의 향촌사회에서의 처신을 다룬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향촌사회의 운영의 문제, 즉 정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향당운영원리라는 의미로 변화 정착되어 나감을 확인하게 된다. 이제 이같은 점을 ‘居鄉之道’, 즉 居鄉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함으로써 확인해 보기로 한다.

우선 ‘居鄉’, ‘居鄉之道’는 사부가 향촌사회에 거하는 것, 향촌에 거해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栗谷 李珣가 《擊蒙要訣》의 接人章에서 ‘居鄉之士’의 자세를 지적하였을 때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다.¹⁶⁾ 그리고 16세기 말 鶴峯 金誠一이 명나라 구준의 〈거향잡의〉를 제

(14) 丘濬 撰, 《文公家禮儀節》(奎中, 2070) 仁祖 4년(1626) 靈光郡 刊

(15) 金恒洙, 1981, 〈16세기 士林의 性理學 理解—書籍의 刊行·編纂을 중심으로—〉《韓國史論》7

中宗 13년(1518) 朱子家禮의 우익서로 간인 반포되었던 《家禮儀節》은 다음 해의 기묘사화로 인해 조광조 일파가 정계에서 제거되는 것과 관련되어 크게 유행되지는 못했던 듯하다. 국내 현전하는 《家禮儀節》은 仁祖 4년(1626) 전라도 영광군에서 간인한 것이다.

(16) 李珣(1536~1584), 《擊蒙要訣》, 〈接人章 第九〉

「居鄉之士 非公事禮見及不得已之故 則不可出入官府」

자들에게 베껴 참고로 하게 하였을 때, 학봉의 조카 金潑(涌)이,

지난번 숙부 鶴鹿大人이 中京에 들어갔을 때(宣祖 10, 1577) 한 책자를 얻어 와 子姪에게 보이고 따로 기록할 것을 명하여 이 두가지(童子禮와 居鄉雜儀)로 檢身, 處鄉의 법칙으로 삼으라 云⁽¹⁷⁾

하였다고 지적한 것도 ‘거향지도’란 향촌사회에 살면서 사족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로 위와 같은 인식과 용법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후 ‘居鄉’에 대한 언급이 일반 향촌사회에서의 삶 전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부, 사족들의 향촌사회에서의 ‘특정한’ 처신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 점은 뒤에 설명하듯이 ‘居鄉’이 ‘居官’, 즉 出仕의 문제와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에 활동했던 호남인 丁焯에 대해서 ‘待人接物 居鄉莅官 一於忠厚 而不露圭角’이라고 평했던 것은⁽¹⁸⁾ 그 단적인 예의 하나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윤리와 함께 사족들은 居家, 處鄉, 處世의 방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處鄉 處世가 바로 居鄉 居官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족이 향촌사회에 거함에 있어서는 온갖 문제가 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었다. 실제 ‘거향지도’는 특정한 향당에서의 처신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거향지도’는 父子兄弟, 讀書, 行身, 治産 등 전반적인 사족들의 향촌생활에 있어서의 도리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와, 그 보다는 좁은 의미로 ‘居家’나 ‘立身(出世;居官)’과 대비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후자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경향성을 草廬 李惟泰의 《庭訓》은 잘 보여준다.

17세기 활동하였던 호서인 초려 이유태는 그의 영변 유배시 고향의 자식과 조카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庭訓》을 짓고, 여기에서 〈祠堂之儀〉등 6가지

(17) 필사본 《童子禮》 및 간행본 《童子禮》, 발문. 필사본 《童子禮》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의 정순우 교수의 배려로 열람할 수 있었음.

(18) 丁焯(1524~1609), 《晚軒先生文集》 권4, 〈墓誌〉, 李尙吉 撰.

의 奉先조목과 〈居室之儀〉〈濟產之規〉 등 가산관리에 관한 6조목, 그리고 禮教相助의 덕목으로 8가지를 제시한바 있다.⁽¹⁹⁾ 禮教相助의 덕목 8가지는 〈家宴之儀〉〈待賓之儀〉〈華樹之契〉〈冠婚之儀〉〈死喪之契〉〈居鄉之道〉〈待故舊之道〉〈處世之道〉이다. 초려는 관혼상장이나 가옥의 규모, 치가의 요법, 종족간의 유대 강화 등과 같은 居家의 문제와 함께 마지막에 〈居鄉之道〉〈待故舊之道〉〈處世之道〉를 같이 첨부하여 가정의 교훈으로 삼게 하였는바, 우리는 여기에서 〈居鄉之道〉가 居家의 문제나 處世의 문제와 구별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거향’ 문제가 단순한 향촌사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향당 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었다고 하는 점은 거향(處鄉), 거관(莅官)에서의 행실이 인물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까지 자리잡게 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중기 사족들이 동료의 인물평에 거향지도를 문제삼는 것, 이를테면 앞서 언급했듯이 17세기 초반 호남인 鄭焯에 대한 인물평에 ‘對人接物 居鄉莅官 一於忠厚而不露圭角’이라고 지적한 것,⁽²⁰⁾ 李廷謙(1562~1637)이 그의 형 참판 李廷馨에 대해 ‘在鄉黨則孝友彰達 在朝廷則忠勤備至’라고 한 것,⁽²¹⁾ 영남인 郭嶠(1568~1633)이 〈師友錄〉에서 인근 인물들을 기술하는데 ‘金九鼎; 位至二品 而居鄉謹密’, ‘權虎臣; 居鄉謹度 事親以禮’, ‘李弘基; 居家處鄉 無一毫苟且之事’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²²⁾ 위 권호신의 아들이 자신 부친의 가르침을 회상하는 가운데 선군께서는 항상 가르치시기를 ‘正直立朝 謙約居鄉’하라고 하였던 점을 지적한 것⁽²³⁾ 등은 모두 거향의 문제가 거관(치세)의 문제와 대비되어 사용되거나 별도의 향당윤리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연대기나 문집 등에서 거향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6세기에 들어서의 일이다. 이는 거향의 문제가 의례적인 鄉禮나 사대부

(19) 李惟泰, 《草廬全集》(1984, 한남대). 김준석교수의 〈해제〉 참조.

(20) 주 18)과 같음.

(21) 李廷謙(1562~1637), 《石泉先生遺稿》〈知退堂先生行錄: 叅判兄 李廷馨〉; 《(月城世家)三翰林聯芳集》 수록.

(22) 郭嶠(1568~1633), 《丹谷集》 권5, 〈師友錄〉

(23) 權省吾(1587~1671), 《東巖先生文集》 권4, 〈陶村聞見錄〉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향당의 운영과 관련되어 주목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들어서면 중앙 조정에서까지 사대부(사족)의 거향처신의 문제가 쟁점화되기에 이른다. 尤庵 宋時烈이 沙溪의 문하에서 수업받은 바 있던 庾軾이란 이에 대한 인물평에서 ‘鄉居五十餘年 無一毫以非義之事見議於朝評’이라고⁽²⁴⁾ 칭하였던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조정에서 향촌 사대부의 거향처신을 문제삼았던 사실은 당시 중앙의 지방지배가 재지사족을 매개로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16, 17세기 향촌사회에서 거향을 문제삼는 경우, 그것은 거의 모두가 官과의 마찰이나 정치세력간의 갈등과 관련이 된 것이었다. 뒤에 설명되듯이 州家政事의 득실을 논하거나 시비를 따지는 것, 官庭에 출입하는 것, 租賦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것 등을 금지시킨 것이라던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판할 때 土豪로 지목하여 그들의 民田 침탈이나 민에 대한 使役, 私刑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던 것 등이 바로 사족의 거향과 관련된 중심적 문제들이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그 핵심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 18세기 후반의 安鼎福이다. 안정복은 역대 鄉黨의 운영원리와 관련된 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총 15개조로 구성된 〈居鄉雜儀〉를 남겼다.⁽²⁵⁾ 그는 9명의 居鄉事例를 가지고 위 논고를 구성하였는데, 기본적으로 孔孟, 朱子의 鄉黨 윤리에 대한 이해 위에서 조선의 退溪, 鶴峯, 栗谷의 향당관의 핵심이라 할 내용들을 보강하여 그의 居鄉觀을 피력하였다.

우선 順菴 안정복이 孔子의 鄉黨논리에서 주목한 점은 세가지로써, 향당에서는 신실해야한다는 것, 나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선악인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朱子의 해석에 의하면 향당은 父兄과 宗族이 거

(24) 庾軾(1586~1650) 《德谷先生文集》 권4, 〈墓表〉 宋時烈 撰.

(25) 安鼎福(1712~1791), 《順菴集》 권15, 〈居鄉雜儀〉

안정복의 거향관에 관한 설명은 위 기록에 의거함. 문집에는 형식상 14개조로 되어 있으나 孔子의 말 3개조, 孟子의 말 2개조, 漢나라 石慶, 後漢의 張湛과 관련된 것 각각 1개조, 朱子의 말 3개조, 胡文定公 관련 1개조, 退溪 관련 2개조, 鶴峯 관련 1개조, 栗谷 관련 1개조 등 15개조로 나누어 강을 세우고 그 밑에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하는·곳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一鄉에는 마땅히 공론이 있기 마련이지만 善惡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부류끼리 서로 어울려 적당히 넘어가든가 선행을 권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악인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孟子 역시 향당에서의 ‘尙齒’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했지만, 순암이 맹자에서 특히 주목하였던 것은 세상 풍속에 휩쓸려 시골에서 군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堯舜의 道’를 회복하려 하지 않는 위선자, 곧 ‘鄉愿’에 대한 경계였다. 향촌에서 이웃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는 것도 미혹한 것으로서 문을 닫아거느니만 못하다고 한 맹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 갖는 의미는 그러했다.

다음 朱子の 예⁽²⁶⁾에서 주목한 것은 향당에서는 大夫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과 여씨향약을 시행하려면 書過, 行罰 등과 같은 조목은 빼고 시행하라는 것 등인바, 전자는 官人에 대한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향당에서의 시비나 논란을 야기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²⁷⁾

그런데 우리가 보다 주목하는 점은 順菴이 조선의 예로서 들고 있는 퇴계와 학봉, 율곡의 거향 자세에서 발견한다. 순암은 우선 퇴계가 거향에 있어 賦役은 반드시 下戶보다 먼저 내서 吏胥들에게 책잡히지 말고, 비록 品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말며, 守畝에게는 예를 다하라고 한 것을 주목하였다.⁽²⁸⁾ 그 가운데도 예안지방의 풍속에 士人들이 品官의 반열에

(26) 順菴 安鼎福은 자신이 쓴 〈居鄉雜儀〉에서 朱子の 예를 검토하기에 앞서, 孟子의 예와 漢, 後漢의 石慶과 張湛의 예를 들었는데 그 중심 내용은 출사한 관인이라도 향리에서는 겸손히 그 예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촌사회의 사족이 중앙 관직을 지낸 이나 지방관에게 예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에 상응하는 역의 논리라고 하겠다.

(27) 안정복은 朱子の 예에 이어 중국의 예로서는 마지막으로 北宋의 胡文定公의 예를 들었는데, 문정공 胡安國은 거향에 있어 물건이나 돈을 빌리면 약속을 분명히 하고 기일을 엄수,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고 한다. 책잡히는 일이 없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28) 安鼎福, 《順菴集》 권 15, 〈居鄉雜儀〉

「退溪先生 居鄉 賦役必先下戶而輸之 吏胥不知爲達官家 禮安鄉俗 士人恥隨品官之列 退溪先生 曰鄉黨父兄宗族之所在 所貴者齒 雖居下 於禮於義 有何不可 錄事梁成義爲禮安縣監 退溪先生盡民主禮 久而愈敬 成義反挾地主之尊 辭甚倨傲 聞者憤怒 而先生終不言其失」

따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점을 나무라면서 향당에서는 나이(齒)가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사실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鄉會의 座次를 연상케 하는 이 지적은 거향의 중심 사안이 향당 운영이었다는 점을 추론케 한다.

한편 학봉의 경우에는 향당이 부형 종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학봉의 말을 인용하면서 鄉中 執綱者를 만나면 그가 비록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加禮하라고 한 것을 뽑아 기록하고, 율곡의 경우에는 앞서 본 《擊蒙要訣》의 접인장의 거향관계 기록을 취록하였다.⁽²⁹⁾ 즉 居鄉之士는 공적인 일로서 예우를 갖춰야 할 방문이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官府에 출입하지 말며 수령에게 간청하는 일은 일체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상의 핵심 내용 역시 향당 운영이라든지 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족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니, 결국 순암이 퇴계와 학봉, 율곡의 입을 빌려 주장한 거향관은 사족의 향당 운영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사족이 향당에 거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순암이 생각하였던 것인데, 北宋의 胡文正公의 예를 제외한다면 18세기 후반 사족 일반의 향촌사회에서의 삶의 자세와는 사뭇 다른 향당 운영원리, 곧 ‘거향관’의 원론 그 자체라 할 것으로서 16, 17세기의 거향지도의 핵심을 잘 드러낸 것이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자리잡게 된 거향관은 바로 국가의 농민지배(수령의 민에 대한 지배)와 사족의 하민지배간의 모순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순의 해결을 위해 사족들은 자신의 양보와 절제를 강요하였고 이것이 재지사족의 거향관으로 나타났는바, 퇴계와 율곡은 그것에 하나의 형식을 부과하였던 것이니, 재지사족의 거향지도는 바로 그들의 향당운영의 원리라고 할 것이었다.

(29) 위와 같음. 「金鶴峯 曰鄉黨父兄宗族所在 不可不敬 如遇鄉中執綱者 雖年少者 亦必加禮. 擊蒙要訣 曰居鄉之士 非公事禮見及不得已之故 則不可出入官府 邑宰雖至親 亦不可數數往見 非親舊乎 若非義干請 則當一切不爲也」 주 16) 참조.

2. 16·17세기 在地士族 ‘居鄉觀’의 구조

위와 같이 ‘居鄉’이 단순히 향촌에 거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재지사족의 향당 운영원리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지사족이 향촌사회에 기반을 갖고 중앙 정계에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향지도는 향촌사회의 사족 내부 구성원들의 윤리로서 특히 강조되었고 인물평에까지 반영되었으며, 나아가 중앙정계에서까지 문제로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진 조선시기 재지사족의 居鄉觀은 어떠한 구조로 짜여지고 있었는가. 우선 향촌사회에서의 ‘거향’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사족 내부의 윤리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되고 있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앞서 언급했지만 宣祖 10년(1577) 학봉 김성일이 중국으로부터 가져와 자제와 문생들에게 베풀어 익히도록 하였다는 ‘居鄉雜儀’이다. 이 거향잡의는 본래 明의 丘濬이 편찬한 ‘家禮儀節’의 일부를 이루었던 것인데, 구준은 ‘가례의절’을 편찬하면서 ‘呂氏舊條’를 기준으로 하고 朱子가 증손한 내용을 절충하는 한편 당시 풍속에 마땅한 바를 참작하여 수 개의 강목을 갖춘 〈거향잡의〉를 편찬하여 ‘가례잡의’(가례의절)의 뒤에 첨부하였던 것이다.⁽³⁰⁾

위에서 ‘呂氏舊條’는 여대균이 지은 ‘鄉約’과 ‘鄉儀’ 가운데 ‘鄉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자는 이 양자를 절충하고 자신의 견해를 일부 붙여 ‘朱子增損呂氏鄉約’을 만든바 있다.⁽³¹⁾ 이 때 주자는 ‘향의’에서 吉儀·家儀·凶儀는 가정의례인 ‘家儀’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賓儀’만을 손질하여 향약에 포함시켜 여씨향약을 증손하였지만, 그 모두 同鄉 사대부 사이에 지켜야 하는 향촌규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명나라의 구준이 가례잡의와 거향잡의를 묶어 《가례의절》을 편찬 것도 대체로 그와 같은 뜻을 담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학봉 김성일의 《居鄉雜儀》는 그가 선조 10년(1577) 書狀官으로 중국에 갔을 때 향교에 있던 禮輯之書를 보고 그 가운데 ‘童子禮’ ‘居鄉雜儀’ 2편을

(30) 丘濬 撰, 앞의 책, 《文公家禮儀節》

(31) 李成茂, 1991 〈呂氏鄉約과 朱子增損呂氏鄉約〉, 《震檀學報》 71·72합집

子姪, 門生의 ‘檢身處鄉之則’으로 삼을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것으로, 학봉이 문생에게 강하는 가운데 轉寫되어 남아오는 것이다.⁽³²⁾ 이 거향잡의는 학봉의 문생이었던 黃有一이 학봉 조카 金潑(涌)에게 부탁하여 전사받아 집안에 보관해오던 것으로서 ‘一鄉’에 끼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正字선조(황유일)가 학봉선생 문하에 드나들면서 받은 것으로서, 학봉선생의 조카 金公潑에게 부탁하여 베껴서 家藏律已之보완으로 삼은 것’이지만 100여 년 전의 일이라 후손 가운데 보고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점을⁽³³⁾ 고려할 때 한 집안에서의 영향력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던 듯하다.

즉 위 거향잡의는 一鄉 士子들의 공론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이전 개인적인 檢身 處鄉의 윤리로서 하나의 교과서 형태로 강습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그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이 거향잡의는 〈背行之等〉 〈相見之禮〉 〈往還之數〉 〈名帖之式〉 〈進退之節〉 〈迎送之禮〉 〈拜輯之禮〉 〈道塗之禮〉 〈請召之禮〉 〈齒位之序〉 〈獻酌之禮〉 〈勞餞之禮〉 〈慶弔之禮〉 〈獻遺之禮〉 등 14개의 綱과 그 밑에 각각 수개의 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가 사대부들 상호간의 예절에 관계된 것인바, 여기에서 異爵者(在京 堂上官 등)는 예외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序齒로 나타나고 있다. 〈齒位之序〉의 ‘聚會’에 관한 설명에 “무릇 모임에는 모두 鄉人이면 나이 순에 따라 자리에 앉고 士類가 아니면 끼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목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그 처향 윤리의 기반이 되는 ‘鄉’이라는 것이 조선에 있어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거향’ 윤리가 위 거향잡의의 그것에서 한단계 나아가 향당, 구체적으로는 향회의 운영원리란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설명한바 있듯이 순암 안정복이 학봉 김성일의 거향관에 대해 언급할 때 “김학봉이 말하길 鄉黨은 父兄 宗族이 거하는 곳이

(32) 필사본 《童子禮》

이 책은 鶴峯의 문인 黃有一이 학봉의 조카 金潑(涌)에게 부탁해서 宣祖 15년(1582) 轉寫받아 황씨 집안에서 보관해오던 것으로서, 이후 크게 주목되지 못하다가 英祖 25년(1749)과 哲宗 4~6년(1853~55)간에 후손들에 의해 잠깐 주목된 뒤 1910년에 간행된바 있다. 刊本의 底本이 된 것은 철종 년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위 책, 黃宗夏 발문(英祖 25, 1749)

니 불가불 공경하는 자세를 갖추야 하고, 만일 鄉中の 執綱을 만난다면 그가 비록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더라도 반드시 加禮해야 한다고 하였다”는⁽³⁴⁾ 점만을 부추긴 것은 그 단적이 예를 보여준다. 즉, 위 거향잡의의 여러 내용들은 공자의 향당관을 계승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지만, 그같은 전제 위에서 향회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향당의 운영원리가 특별히 '거향'의 윤리로서 부각되었던 것이다.

재지사족은 이 향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앞서 자주 이용한 인물평 외에도 아동용 교과서나 가훈의 형태, 그리고 향약이나 향규 등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향촌사회를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정과 관련된 것이다. 영남 함안인 李滯이 임란 후 함안 향안을 중수할 당시 서문에서, '가정에서는 孝와 悌로써 서로 이끌어 가문의 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處鄉에는 忠과 信으로써 서로 권면하여 일향의 기강이 정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 것은⁽³⁵⁾ 향당이 바로 향안(향회)의 기본 단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향당운영의 윤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족간의 序齒에 따른 장유질서의 확립의 문제 및 鄉會의 운영, 거기에 있어서의 官權(수령권)과의 마찰 방지 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순암이 퇴계의 거향관에 대해 요약하면서, 퇴계가 居鄉에 있어 賦役을 하호보다 먼저 내고, 錄事 양성희가 예안현감으로 내려왔을 때도 그에게 수령대하는 예(民主之禮)를 각듯이 하고 그의 거만함에 대해 다른 사람이 듣고 분노해도 퇴계만은 그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다고 특기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었다.⁽³⁶⁾

영남인 蒼石 李堧의 조카인 李身圭같은 이가 守令의 政事得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이 居鄉에 있어 第一義라고 한 자기 부친의 유훈을 강조하였던 것,⁽³⁷⁾ 같은 17세기 중반에 호서인 尹棼(1616~1673)이 居鄉 數十

(34) 주 29)와 같음.

(35) 李滯(1514~1613), 《茅村先生文集》 권 2, 〈咸安鄉案重修序〉

(36) 주 28)과 같음.

(37) 李身圭(1600~1681), 《西溪集》 권3, 〈權侍日錄〉

「一日侍側 書一紙以教 曰州家政事得失 絕口不談 或有來言 亦勿酬答 此是居鄉第一義也」

년에 官人들과 교통하지 않고 花樹나 기르는 것으로 낙을 삼아 門庭이 항상 적막하였지만, 糶糶(환곡)을 낼 때를 당해서는 관에서의 독촉을 기다리지 않고 기한보다 먼저 납부하였으며 徭役에 있어서도 종(奴)을 시켜 남보다 먼저 부역하도록 하여 官令을 어기지 않고, 논 한조각이라도 正稅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없었는바, 말하길 “이같은 일이 비록 미세한 일이지만 또한 나라를 속이는 일이니, 士大夫가 居鄉에 있어서 官의 徭役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은 武斷이 아니면 구차스러운 것이니 모두 그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던 것,⁽³⁸⁾ 19세기 초 호남인 邊以中이 長城의 〈鄉憲〉을 撰하면서 그 마지막에 “公家의 賦役을 때맞춰 납부하는 것이 居鄉의 第一 急務이다.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경중에 따라 벌을 시행한다”는 조목을 두었던 것⁽³⁹⁾ 등이 다 鄉黨, 鄉會의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官과의 마찰을 피하는 문제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위와 같은 예들은 朱子가 鄉黨에서는 大夫를 비난하지 말라고 한 일이라던가, 여씨향약을 증손하면서 관가에 내는 賦役에 충실할 것을 추가했던 것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고, 儒者들이 신념으로 갖고 있던 한 논리, 즉 ‘不在其位 不謀其政’의 논리와도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에서의 그것은 뒤에 언급하듯이 단순히 유교의 규범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한편 사족이 향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관과의 마찰을 피하고 가능한 수령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관권에의 예속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栗谷이 海州의 鄉規, 〈海州一鄉約束〉에서 品官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함께 官에 나아가 자신들의 처지를 구명하도록 하고 있거니와, 같은 의미에서 그들이 수령과 대등한 입장임을 강조하는 이도 있었다. 실제 그들은 향촌사회에 있어서는 수령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지만 일단 그들도 출사를 하면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었다. 宜寧 현감을 지냈던 李涵에

이 〈權侍日錄〉은 李身圭가 50가까운 나이에 그의 부친 月澗公 李堧(1558~1648)을 옆에서 모시고 봉양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신규는 李堧의 從弟인 蒼石 李竣의 조카이기도 하다.

(38) 尹棼(1616~1673), 《都正公遺稿》 권2, 〈遺事〉

(39) 《長城鄉校誌》, 〈鄉憲〉 邊以中(1546~1611) 撰.

대해 그의 아들이 行狀에서,

子孫들을 가르치되 忠信儉約을 우선하였고 (중략) 吏胥들을 다스릴 때도 모두 능숙하게 통달해서 지체되는 일이 없었으니, 官에 임해 일을 처리할 때 公的으로 깨끗하고 근실하여 힘써 上下人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居鄉’에 있어서도 이같은 도리를 유지하고 변치 않아 人物을 평가하고 鄉憲을 유지하는 데 한가지로 公的인 마음으로 처리하였다.⁽⁴⁰⁾

라고 적고 있었다.

바로 위와 같이 官과 대등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수령한테 책잡히는 일이 없어야 했고, 실제 그러하였는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들은 官庭에 드나드는 것을 금기시 했고 官家에서 부과하는 부역을 누구보다 더 먼저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향회의 운영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鄉規’이다.

鄉規는 在之士族의 居鄉觀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재지사족 거향관을 규정한 향회의 규약이었다. 16, 17세기에 在地士族은 吏族을 배제한 후 자신들의 결집 기반으로서 鄉案(鄉籍)을 작성하고, 그 구성원인 鄉員들이 鄉會를 통해 일향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향회에서는 향안을 수정하거나 향임을 천망하는 외에, 鄉任이나 鄉執綱을 무시하는 常漢을 처벌하기도 하고, 士族 공동의 이해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나 사족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가 하면 吏胥층의 작폐를 규제하기도 하였는바,⁽⁴¹⁾ 그 핵심적인 기능은 향촌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인사권과 부세운영권의 장악을 목표로하는 것이었다. 이는 16, 17세기 향촌 사회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같은 조건과도 관련하여 재지사족들의 거향관도

(40) 李涵(1554~1632), 《雲嶽先生文集》附錄〈行狀〉男 宣敎郎康陵參奉 時明 狀

(41) 金仁杰, 1983 〈조선후기 鄉案의 성격변화와 在地士族〉, 《金哲俊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申正熙, 1984 〈鄉案研究〉, 《大丘史學》 26

金容德, 1986 〈鄉規研究〉, 《韓國史研究》 54

全炯澤, 1989 〈17세기 潭陽의 鄉會와 鄉所〉, 《韓國史研究》 64

金炫榮, 1990 〈17세기 燕岐지방의 鄉規와 향촌사회구조〉, 《韓國學報》 61, 一志社

초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던 거향윤리 관념에서 나아가 정치 경제적 성격을 함의한 향당윤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리학적 윤리로서의 거향관과 향당(향회) 운영원리로서의 거향관에 순차적이면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일부 지적하였지만, 성리학의 이해과정에서 <가례>나 <주자증손여씨향약>과 함께 알려졌던 ‘鄉儀(거향잡의)’의 내용, 특히 앞에서 검토한바 있듯이 학봉이 중국에서 가져와 子姪, 門生에게 배기도록 하였다는 <거향잡의>(明나라 丘濬 撰)와 그 이후 18세기에 조선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거향잡의’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16세기에는 아직 체계적인 조선인의 거향잡의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언급한바 있듯이 16세기 후반 栗谷 李珣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의 《擊蒙要訣》의 10개의 장 가운데 제9장 <接人章>에서 거향에서의 지켜야 할 윤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격몽요결》은 아동용 교과서로서, 7장까지 立志, 革舊習, 知身, 讀書, 事親, 喪祭, 祭禮 등의 문제를 다루고, 8장에서 ‘居家’의 문제, 9장에서 ‘接人’의 문제, 10장에서 ‘處世’의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 그런데 接人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어른을 대하는 태도나 절이나揖을 하는 원칙 및 친구를 골라 사귀고 선한 사람과 가까이하라는 등 일반 원칙 외에, 그 대상에 따른 금기사항을 다루고 ‘居鄉之士’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첨부하였다.

《격몽요결》의 접인장에서 율곡은 그 대상을 先生과 長者, 鄉 長老, 朋友, 鄉人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禮를 설명하고 있다. 선생과 장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리를 질문하여 그 학문을 깨우치고, 一鄉의 長老를 모실 때는 공손히 대하고 말을 함부로하지 않으며 질문이 있으면 진실되게 해야 한다는 점, 朋友들 사이에서는 도의로써 강마하며 문자나 의리만을 말해야지 향간의 비루한 말이나 時政得失 守令賢否 他人過惡 등은 일체 입에 올리지 말것, 鄉人들과 더불어 있을 때에는 질문에만 대답하고 끝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것 등을 가르치고 있다.

위 율곡의 가르침에서는 時政得失이나 守令의 인물됨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시골 선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공적인 일이나 예에 따라 보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官府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특기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선비(사족)들의 거향에서의 도리와 관련된 율곡의 주문 가운데 18세기 후반 순암 안정복은 유독 마지막 부분, 즉 선비들이 관부에 출입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내용만을 뽑아 그의 〈거향잡의〉에 수록하였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 17세기에 뒤 시기의 안정복이 정리한 것과 같은 ‘거향잡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의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재지사족은 군현단위로 유향소를 운영해오고 있었고 그들 나름의 향약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시말하면 주자의 거향관이 ‘주자증손여씨향약’을 통해 이해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명의 기준이 별도의 ‘거향잡의’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조선의 사대부들도 주자의 향약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 나름의 향약(향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고, 이것을 별도의 ‘거향잡의’로 정리할 필요는 아직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中宗代人 姜叔突의 卒記에서 史官이 “오랫동안 향리에 살면서도 발이 官府에 이른 일이 없고, 작고 번잡한 徭役도 일반 서민과 같이 하였다”라고 평하였던 것은⁽⁴²⁾ 매우 시사적이다. 즉, 18세기에 들어와 정리되는 ‘거향잡의’ 류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윤리관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官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향촌사회 운영원리를 반영하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었는바, 위 卒記는 바로 그 원형을 잘 보여준 것이었다. 이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위 순암의 거향잡의가 바로 16, 17세기의 향당 운영 경험을 총괄하는 의미를 갖는 것임을 알게 된다.

한편 재지사족의 거향관에서 주목되는 것의 다른 하나는 士族과 下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이다. 이는 이미 향규 등의 吏民 통제, 향약의 下民 통제 등에서 잘 나타나는 바이지만,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던 것은 ‘賑政’ ‘救恤’ 등 농민들의 재생산기반의 확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같은 특징은 17세기 전반을 살았던 曹煥의 ‘行宜’에 대해 그의 작은 아들 曹挺

(42) 《中宗實錄》 권22, 中宗 10년5월 辛亥(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15, 82쪽)

五가 기술한 다음의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다.

居鄉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이 추대한다고 해서 自尊하지 않고 역시 과박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고담준론으로써 남한테 기세를 뽐내지 않았다. 鄉中의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참여치 않았으며, 문생이나 죽인이 혹 풍문으로 아뢰더라도 先君께서는 역시 發明하려하지 않았다. 남을 대접할 때는 비록 상대가 미천한 사람이라도 필히 성의를 다했으며 싫어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매번 救濟해야 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해 자기가 수고로운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 옆에서 시중드는 자체가 혹시 과도하게 진언을 하면 선군께서는 반드시 순순히 그를 경계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하였으니, 남을 덕으로써 대하는 후함이 이와 같았다.⁽⁴³⁾

위 기록은 거향에 있어 對人接物의 중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救濟(賑恤)의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그보다 앞서 풍기인 郭暻이 ‘鄉黨에 처함에 있어 힘써 자기를 낮추고 일찌기 남보다 더 낮다고 하지 않았으며, 질병을 구하고 궁핍한 자를 구휼’하였던 사실⁽⁴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曠진이 ‘接物’에 있어 비록 노비와 같은 천한 이라 하더라도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은⁽⁴⁵⁾ ‘對人接物’의 대상에 같은 士類나 鄉人 외에, 비록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긴 하지만, 노비나 하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조선시기 재지사족의 거향관의 기본 골격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사상적인 측면으로 사족간의 관계를 다룬 사족 내부의 윤리,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향당의 운영과 관련한 관부(국가)와의 관계를 다룬 부문, 셋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하민(노비)과의 관계 등을 다룬 부문이 그것이다.

물론 이 세 측면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재지사족의 기반과 그들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해서 통일되어 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지사족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향당에서의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자신들의

(43) 曹煇(1600~1665), 《九峯遺集》 권3, 〈事實輯錄〉(次子 挺五 撰), 〈行宜〉

(44) 郭暻, 앞의 책 《丹谷集》附錄 〈行狀〉

(45) 위와 같음

「其接物也 雖奴隸之賤 不忍加之厚罵」

계급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16, 17세기만 하더라도 아직 이것이 체계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같은 특성은 후대 안정복같은 이들에 의해 정확히 포착되고 있었다.

이제 재지사족 거향관의 정치적 성격을 전후 시기 거향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보여준 이들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더 분명히 해보도록 하자.

3. '居鄉觀'의 정치적 성격

상술한 바와 같이 재지사족의 '거향관'은 여러가지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손들에게 주는 遺訓이나 家訓의 형태로부터 역으로 자손이나 문생이 선대나 선생에 대해, 또는 친구나 후배가 동료나 선배에 대해 언급해 놓은 각종의 인물평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卒記'나 각종 사건 기사에서의 인물평에도 거향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한편 위와 같은 개인의 의사표시나 개인에 대한 인물평의 형태만이 아니라 《擊蒙要訣》로 대표되는 당시의 아동용 교과서에도 거향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15, 16세기 크게 유행하였던 《小學》 등의 교재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겠다.

대체로 위와 같은 기록들은 16세기 지배적 사회사상으로 되고 있던 조선 성리학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례, 소학 등의 보급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었다. 명의 구준이 편찬한 〈거향잡의〉가 《가례의절》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었고, 그 中宗代 刊本이 유행하지 못하고 이후 다시 수입되어 큰 수정을 거치지 않고 17세기 초에 다시 간행을 보고 있었던 사실은 당시 사대부들의 성리학 이해수준을 일정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찬서들은 당시 지배층 윤리서로서의 성격이 큰 것이었고 따라서 그 중심 대상도 아직은 지배층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초기 재지사족의 거향관의 핵심 내용도 사대부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長幼有序' '朋友有信'이라는 二倫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한편 지배층들의 거향관은 위와 같은 개인적 기록에서보다는 '향약'이라

고 하는 보다 집단적 사회윤리 속에 더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의 향약은 중종대 조광조 일파에 의해 위로부터 급진적 방법으로 실시되었다가 기묘사화 이후 그 시행이 크게 위축되고 이후 관심있는 이들에 의해 각 군현이나 거주지를 중심으로 개별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어온 것으로서, 중소지주층들의 대민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온 주자향약은 주자가 남전여씨의 향약에 여대균의 ‘향의’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예속상교’부분에 보완을 가하여 지배층들의 ‘社會儀式’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⁴⁶⁾ ‘鄉儀’에는 賓儀 吉儀 家儀 凶儀가 있어 이 가운데 賓儀가 15개 항목으로 가장 상세한데, 朱子는 길의, 가의, 흉의는 대부분 家儀에 해당하기 때문에 鄉儀에 해당하는 반의만을 예속상교 항목에 대폭 손질을 가하여 편입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 주자가 여씨의 그것을 보완한 부분으로 月壇集會讀約의 禮와 租賦에 힘쓰고 法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강조사항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자의 강조점은 향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구성원들간의 결속이 필요하고 국가권력과 마찰을 피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향약 자체가 윤리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서조차 ‘鄉儀’는 지배층 내부의 ‘儀式’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정치적 성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 향약이 지배층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6세기 성리학의 이해과정에 따라 ‘二倫’이 기존의 ‘三綱’과 함께 새롭게 주목되고 있었던 것도 바로 16세기 사대부들의 상호 결속의 강화와 관련되는 것이었다.

이제 16, 17세기를 지나면서 재지사족의 거향관은 나름대로의 독자인 정치적 성격을 띠워나가게 된다. 이는 사림파의 정치적 진출, 소학보급운동, 향약보급, 특히 조광조 일파의 향약실시운동 등과 관련시켜 이해해볼 수 있

(46) 이성무, 앞의 논문 참조

을 것이다. 이 향약실시운동 자체가 당시 지배층의 도덕정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면서도 그 실 내용이 훈구파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림파가 결정적으로 정치권에서 배제되게 된 사실이 그같은 점을 반증한다. 즉, 당시 지배층들의 집단적 움직임 속에서 재지사족의 거향의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거향관은 성리학의 장유질서에 기초한 향당윤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재지사족의 향촌 지배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향권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었다. 재지사족의 거향관은 국가의 대민지배를 담당하였던 지방관의 지방지배 및 향회의 운영, 즉 사족 내부의 결속과 리민의 통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주자의 ‘居是鄉 不非其大夫’라는 지적이 말하는 관권과의 마찰 방지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고, 향약의 주요 항목에 국가의 법령준수나 부세납부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있던 당시 지배층들의 거향관 역시 성리학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16, 17세기 재지사족의 거향관의 중심 내용은 성리학적 윤리관을 넘어 조선 재지사족의 정치적 지위 및 그 변화와 관련하여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中宗 13년(1518) 金安國이 구입하여 왕에게 올렸던 明의 丘濬이 편찬한 《가례의절》에 부록으로 포함된 〈거향잡의〉가 ‘輩行之等’ ‘相見之禮’ 등과 같은 사대부 내부의 장유질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그것을 宣祖 10년(1577) 金誠一이 다시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子姪, 門生들에게 講하였다는 사실 등과 비교했을 때 18, 19세기 상당수 조선학자들에 의해 정리된 ‘거향잡의’들은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띤 조선 재지사족의 향당(향회) 운영원리란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순암 안정복이 중국의 예와 조선의 퇴계, 학봉, 율곡의 예로써 구성한 15개조의 〈거향잡의〉에 집약적으로 표현된 재지사족 거향관의 핵심 내용은 향당(향회) 운영원리로서 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족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니, 결국 순암은 퇴계와 학봉, 율곡의 입

을 빌려 사족의 향당 운영원리를 정리한 것이었다고 하겠다.⁽⁴⁷⁾ 그리고 그것은 수령권과의 상호 길항관계 속에서 사족들이 향권을 행사하고 있던 16, 17세기의 지방사회의 권력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순암의 거향잡의의 내용은 중국 宋代 여대균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던 〈향의〉나 明代 구준이 만들었던 〈거향잡의〉의 그것이 향촌의 지배층 내부의 倫理나 儀式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조선 사족이 하나의 전범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주자 향약에서의 거향논리와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언급하였듯이 주자의 향약은 여대균의 〈향약〉에 〈향의〉를 참조하여 ‘예속상교’를 보강하고, ‘月旦集會讀約’법을 추가하여 儀式적 측면이 강화된 것으로서 조선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주자가 그 향약에서 국가의 조부를 잘 납부하고 법령을 잘 지켜야 함을 강조한 것이 조선의 사족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터이지만 官權(수령권)과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조선의 〈거향잡의〉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16, 17세기 조선 재지사족의 거향관은 사대부 개인윤리의 차원을 넘어선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재지사족이 조선 중기에 군현단위의 향촌사회에서 그들 나름의 사족중심의 향촌지배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순암 안정복이 지적한 퇴율의 거향관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단 순암만이 인식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재지사족이 鄉權을 행사함에 있어 제약이 가해지고, 향권이 사족의 수중을 떠나면서 향촌사회 운영원리로서의 居鄉觀이 변질되어가는 가운데 ‘居家’와 ‘處世’의 내용까지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향촌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居鄉 ‘鄉班’이 지켜야할 도리라는 의미로 변질되고 있었지만, 知吾齋 宣始啓(1742~1826)의 〈居鄉雜議十九條〉, 故山 任憲晦(1811~1876) 및 默吾 李明宇(1836~1904)의 〈居鄉八戒〉 등이 그 遺香을 남겨주고 있다.⁴⁸⁾

(47) 주 25), 28), 29) 참조.

(48) 金仁杰, 1994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거향관(居鄉觀)’변화〉, 《역사와현실》 11

맺 음 말

조선의 건국 초기 재지사족은 그들이 주로 중소지주층 출신이라고 하는 출신 기반과 관련하여 농민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또 구래의 권문세가들과의 대립적인 위치로 인하여 왕을 정점으로 한 집권적 관료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권력이私人에 독점되는 것을 막고 농민층의 안정을 확보한 위에서 권력의 균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의 물질적 기반의 강화와 관련해서 국가권력이나 일반 농민층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건국 초기라는 정치적 조건은 신구 지배층의 교체와도 관련하여 재지세력의 독자적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초기 왕권의 전제화 경향 속에서 그들은 중앙권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전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 부민고소금지법이라던가 유향소의 치폐는 그들의 취약한 입지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때 지방사회를 관권의 일방적 통제로만 장악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당시 사적 경제에 예속되어있던 다수의 농민들과 공동체적 질서하에 있던 일반 농민들을 직접 파악할 수 없었던 조건에서 재지의 지배층을 어떠한 형태로든 권력의 동반자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각종 법적 장치의 정비라는 것은 이와 같은 지배체제의 유지에 형식을 부여하기 위한 것 이상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지만 정치적 대립이 아직까지는 중앙권력 내부의 문제에서 그치고, 재지사족이 그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재지사족이 16세기 후반, 하나의 새로운 사회세력으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가지로 흥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는 중앙 집권관료들과의 정치적 대립에서의 명분 확보, 향촌사회에서의 그들 나름의 조직적 기반의 확보가 있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거향관이 하나의 체계화된 형태로 16세기 후반 17세기에 들어와 정형화되었던 것도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

는 것이었다.

재지사족의 거향관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향당윤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지만, 16, 17세기 향촌사회에서 거향을 문제삼는 경우 그것은 거의 모두가 관과의 마찰이나 정치세력간의 갈등과 관련이 된 것이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州家의 政事 得失을 논하거나 是非를 따지는 것, 官庭에 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租賦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것 등을 금지시킨 것이라던가, 지방세력을 土豪로 지목하여 비판할 때 民田의 침탈이나 민에 대한 使役, 私刑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던 것 등이 바로 사족의 거향과 관련된 중심적 문제가 무엇이었던가를 보여준다. 이같은 사실은 재지사족의 거향관이 바로 국가의 농민지배(수령의 민에 대한 지배)와 사족의 하민지배간의 모순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기 재지사족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향촌사회의 권력기구를 확보하고 향회 등과 같은 기구를 운영하였던 경험이 기반이 되고 있었다. 재지사족은 위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들의 양보와 절제를 강요하는 한편 官府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이것이 재지사족의 거향관으로 나타났는 바, 퇴계와 율곡은 그것에 하나의 형식을 부과하였던 것이다.

재지사족 거향관의 구조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사족 내부의 관계설정, 둘째는 관부(수령권)와의 관계설정, 셋째는 하민과의 관계설정 논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같은 '거향'의 논리는 '거가'나 '처세'의 논리와는 별개로 인물평에까지 반영되었고, 당시 지배층이 재지적 기반 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거향처신의 문제는 중앙정계에서까지 문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거향관의 정치적 함의는 음미를 요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이 재지사족의 거향관의 핵심은 재지사족이 향촌사회에서 자신들의 결집을 바탕으로 관권과의 관계에서 독자적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사족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또 향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만도 아니었다. 거향관의 실현 기제가 향회였고, 향회는 향촌사회 권력기구의 인사권과 부세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과도 관련하여 향촌사회 내부로는 吏民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중앙정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해 본다면 중앙정국의 운영과도 관련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 17세기의 재지사족이 나름대로의 거향관을 내면화하면서 사족중심의 향촌사회 지배체제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권력의 향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중세사회의 발전이 어떠한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는 데 시사해주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